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95호 2021. 07. 16(금)

**조 례**

제1676호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0358
제1677호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30360
제1678호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30362
제1679호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365
제1680호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366
제1681호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30368
제1682호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0369
제1683호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0371
제1684호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372
제1685호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30373
제1686호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0382
제1687호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383
제1688호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384
제1689호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30389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76호

###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의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을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④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 ◇ 개정이유

-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이 되는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독립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1. 7. 13.)로 제정됨에 따라,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새롭게 제정된 법률 조문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용어의 정의를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 (안 제2조제1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중 일부 삭제 (안 제7조제1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요건에 조례를 위반한 경우도 추가 (안 제26조제2호)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77호

###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김해시의회 및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 및 시 소재 국가·경남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이 조례는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78호

###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김해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민족행위자”란 일본제국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로서 발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남아있는 유형·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강제징집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그 밖에 일제 및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예술 작품 및 그 밖의 창작물
5.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6.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7.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출장소
2. 김해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위탁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내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일제잔재 청산사업)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 및 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파악
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
3.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
5. 공공기관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여 및 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반민족행위자를 선양·추모·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제한·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등) 제5조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일제상징물을 설치·게시·비치하거나 공연·재생·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일제상징물을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상영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제10조(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 수립
2. 제6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 평가
3.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 선정
4.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사, 사업 등에 참여 및 예산지원 제한
5.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제 상징물 해당여부 및 사용제한·조정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역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디자인 및 문화·예술·창작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등과 관련 역사인식 제고와 일제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반민족행위자의 정의 (제2조제1호 관련)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민족행위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더라도 뒤에 뚜렷한 항일 행적이 확인되는 사람은 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한다.

1. 을사늑약(을사조약), 경술국치(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사람
2. 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사람
3.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부찬의)로 활동한 사람
4. 일본제국 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사람
5. 고등관 이상 관리로 재직 한 자와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6. 경부 이상 경찰로 재직 한 자와 고등경찰로 활동한 사람,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7.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 한 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활동한 사람, 반민족매국 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8. 판사·검사로 재직 한 자와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 관리
9. 국책 경제기관·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협력한 사람
10. 도·부의원등 관선·민선의 공직자로서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사람
11.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에 저항하여 싸우는 부대·단체·개인을 공격하거나 명령·조장한 사람
12.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항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람
13.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항쟁을 방해한 사람
14. 항일항쟁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처형·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사람
15. 학병·지원병·징병·징용·공출·국방헌금 등을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사람
16.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협력한 사람
17.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다액의 금품을 헌납한 사람
18.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19.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책임자
20. 종교계 지도자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2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창작과 공연활동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사람
22. 교육·학술·언론계 인사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의 논리를 수용하여 확산시킨 사람
23. 친일·침략전쟁 협력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사람
24. 기타 전문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정책과 침략전쟁 수행에 협력한 사람
25.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사람
26.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협력한 사람
27. 항일항쟁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협력한 사람
28.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
29. 그 밖에 뚜렷한 반민족행위의 증거가 확인되는 사람

#### ◇ 제안이유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로 인하여 남아 있는 김해시 내 일제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제잔재의 조사 및 청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일제잔재 청산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반민족행위자 선양·추모·기념하는 행사, 사업 등에 참여 및 예산지원 제한, 일제상징물 노출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일제잔재 청산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79호

###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 등의 수립 및 조례·규칙의 제·개정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증진의 제9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자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김해시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조례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보호·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조례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 (안 제8조)

- 시장이 정책·계획 등의 수립 및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제·개정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김해시 인권위원회의 기능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 (안 제10조제2항3호)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0호

###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김해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자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김해시 환경교육 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5.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6. 환경도서관 운영
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급증,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짐.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 (안 제5조)
- 학교환경교육 지원 (안 제6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안 제7조)
-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안 제8조)
-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0조)
- 홍보 및 표창 (안 제11조)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1호

###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3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은 설명회, 주민자치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다.
- ③ 시장은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등 통보)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한 내용을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해당지역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지원대상지역의 주민 및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안이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지원대상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주민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사업계획 등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2호

###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결제 또는 카드결제,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운영규정”을 “제3항의 운영 규정”으로 한다.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면적)	성수기		비수기		비 고
		금요일 및 공휴일전날	일~목요일	금요일	일~목요일	
카라반사이트	1개소	40,000	40,000	40,000	40,000	전기시설, 쓰레기봉투 포함
텐트사이트	1개소	30,000	30,000	30,000	30,000	전기시설, 쓰레기봉투 포함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소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 성수기 : 7월 ~ 8월(2개월), 공휴일 전날(예시 : 24일이 공휴일이면 23일은 성수기요금 적용)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별표 2】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환 기준		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당일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 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 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운영자 귀책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1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20 반환
		당일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30 반환

-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개정이유

- 캠핑장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권고에 따른 캠핑장 요금할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이용자 기준의 사용료의 환불규정 개정을 통하여 민원 발생요인을 감소하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방법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캠핑장 시설사용료 인상 (안 제5조, 별표 1)
-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확대 (안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 사용료 환불 규정 구체화 및 신설 (안 제8조, 별표 2)
- 수탁자 선정방식 개정 (안 제13조)
- 수탁자 선정방식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 14조부터 제16조)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3호

###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 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검토 등)가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함.

#### ◇ 주요내용

- 김해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3)
  - 지역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의 구성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3제2항)
  - 투자우선순위 사전 조정의 공신력·적실성 제고를 위함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4호

###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도 및 농어촌”을 “관내”로, “가 축”을 “가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호다목 중 동물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제5조 단서 중 “천연기념물(동물)”을 “기념물인 동물”로 한다.

제6조 중 “동물”을 “야생동물 및 가축”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 가능한 동물학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포상금 조항을 삭제하고자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 (안 제명)
-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의 규정에 반영 (안 제2조제1호)
- 상위법에 따른 도로관리청 적용부분을 명확히 규정 (안 제3조)
- 포상금 조항 삭제 (안 제7조)
- ㉠ 밖에 자구 수정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5호

###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을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위원회 심의 시 반영한 사항과 심의조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신고대상 또는”을 “건축신고대상의 변경 및”으로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및 실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건축물

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바. 영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사.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연면적 합계 10분의1 초과 또는 2개층 이상 층수 변경

제6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은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4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5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등 서면 심의하는 것”을 “심의등을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서면심의”를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16조 후단 중 “서면심의”를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다만,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그 밖에 허가권자”로 한다.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의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의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의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을 “제28조제1호의4의”로, “확인업무는”을 “확인업무 :”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4. 제28조제2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④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 허가나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3”을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를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7”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0분의 7”을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1 +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 대지면적 ]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 1 +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 대지면적 ]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중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횟수는 5회”를 “1회”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제2호 중 “양성화하는”을 “적법화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양성화하고자”를 “적법화하고자”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치 중인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반사항을 적법화하고자 부과 요청한 경우. 이 경우 1회로 한정한다.

제48조의3제3항 중 “100분의 50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2항제5호의 경우 100분의 30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이행강제금의 가중)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년)차는 100분의 25
2. 2회(년)차부터는 100분의 50

제49조를 제51조로 하고,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3.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6.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7.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8.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9.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5. 제49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6. 그 밖의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등의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3조(공개공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가중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정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제18조 관련)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건축계획서)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대지의 공지(이격거리) 5.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6.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7.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별 면적(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8. 현장사진 9. 위치도 및 주변현황(주거지역 및 학교와의 이격거리와 주변 건물현황) 10. 조경계획도 11. 교통 및 주차계획도 12. 토지굴착 및 옹벽도(토지굴착계획서, 기초에 대한 의견, 옹벽설치계획서 등)
평면도	1. 각 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4. 전기·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물에 한함)
입면도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조감도(건축물색채 및 모양) 4. 야간경관 조명
주단면도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 높이 3. 구조설명서 및 구조계획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상세도면)

※ 설계도서 축적은 임의 작성

[별표 4]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31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 이상 금액

- 비고 :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 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신고 및 이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할 때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5]

대지의 공지 기준(제41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li> <li>•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li> </ul>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li> <li>•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li> </ul>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장례시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 6미터 이상 (30세대 미만 3미터 이상)</li> <li>• 연립주택 : 2미터 이상</li> <li>•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li> </ul>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및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미터 이상</li> <li>1)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넓은 도로에 적용한다.</li> <li>2) 도로의 모퉁이에서 정하는 건축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li> <li>3) 1)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의 경우 장변에 접한 도로(주도로)로 한정한다.</li> </ul>

비고 :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0.5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장례시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30세대 미만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0.5미터 이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용도 외 가목 내지 마목을 제외한 용도 : 1미터 이상)

[별표 6]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제36조제6항제1호 관련)

1. 표기내용

-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 등(쉼터)입니다.” 등)
-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등 위치 및 영역 표시
- 다. 범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 라. 그 밖에 공개공지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

- 2. 설치규격 : (부착형) 가로 500mm 이상 × 세로 750mm 이상  
(지주형) 가로 500mm 이상 × 세로 1200mm 이상

- 3. 설치재질 :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고려하여 미관에 지장이 없고, 파손 우려가 적은 금속재 등

[별지 제4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

신청인 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설계자 <input type="checkbox"/> 시공사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건축주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공사감리자)	성명	(남/여)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시공사	성명	(남/여)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완화 받으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으려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으려는 사유			
완화 적용 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p>「김해시 건축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남/여) (인)</p> <p>김해시장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개최일자	
민원명				개최장소	
민원인	주소	(남/여)			
	성명				
신청내용	대지위치				
	건물용도		지역지구		
	대지면적 (㎡)		지 목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안건내용					
<p>상기 건에 대하여 「김해시 건축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관련기관 및 부서	관계법령	검 토 의 견			가,부 또는 조건부
소 속 :		직 위 (급) :		성 명 : (인)	



관리번호  -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1. 공개공지등 현황 (4쪽 중 제1쪽)

위 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건 축 물 기본정보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건 폐 율	%	용 적 륜			
	층 수	지상	층 수	주 용 도		
		지하				
	건 축 기 준 화 내 용	용적률완 화				
		높이 완화				
		기 타				
	건 축 주		(남/여)	연 락 처		
설 계 자		(남/여)	연 락 처			
시 공 자		(남/여)	연 락 처			
면 적		㎡	유 형			
공 개 공 지 등 기 본 정 보	조 성 시 설	휴 게 시	벤 치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테 이 블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설	파고라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운 동 기 구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기 타 시 설	조 명	<input type="checkbox"/> 설치( 개)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기 타 시 설	<input type="checkbox"/> 설치( ( 개))
	안내 표지판		설치 방법	<input type="checkbox"/>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input type="checkbox"/> 지주형(독립된 표지판)		
감 리 자		(남/여) (인)(사무소명 : )				
공개공지등 배치도						

(4쪽 중 제2쪽)

공개공지등 사진1)

1) 공개공지등 사진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상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

(4쪽 중 제3쪽)

공개공지등 시설사진2)	
안내 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 타 시 설

2) 공개공지등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6호

###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부 모두”를 “신혼부부 양쪽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만,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7년 이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자녀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7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함에 따라 기존 대출금 상한액은 오히려 지원의 한계가 될 수 있어 상한기준을 삭제함.

#### ◇ 주요내용

㉠자녀 이상인 신혼부부의 경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기간 연장 (안 제4조제1호)

㉠대출금액 상한기준 삭제 (안 제4조제4호)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7호

###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개방)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 서원, 전통사찰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역사공원의 주제와 관련된 기념비, 기념탑, 홍살문 등의 시설
3. 자료관, 기념관, 전수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4.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김해시 관내 공원시설의 관리 및 역사공원의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개방 조항을 신설하고 및 역사 관련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개방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8호

###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맛집”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①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나 동업자조합, 관련단체 등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지정 추천서를 제출하여 추천한 영업소는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별표의 맛집 심사표 작성을 위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

⑤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맛집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지정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맛집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영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맛집 재심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지정받은 대표음식이 변경된 경우
3. 영업소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증 회수
  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 ④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맛집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2. 맛집 안내홍보책자·맛집 지도 발간 및 배부
3. 인터넷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및 지원
4. 맛집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5. 맛의 개발·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및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맛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맛집의 지정·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맛집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위생·관광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식품관련 학과 대학교수  
다. 식품관련단체 대표  
라. 요리전문가  
마. 그 밖에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맛집 지정 추천서 (제4조제2항 관련)				
추천 업소	업소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대표음식		전화번호	
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	<input type="checkbox"/> 읍·면·동장 <input type="checkbox"/> 관련 단체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추천동기 및 추천인 의견		<input type="radio"/> 추천업소 대표자 동의(예, 아니오) <input type="radio"/> 추천동기 및 의견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년       월       일                    (서명)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김해시 맛집 재심사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업소명 (업종)		영업신고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맛집 지정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별지 제4호서식]

<b>제 호</b>			
<b>김해시 맛집 지정증</b> (제4조제5항 관련)			
업 소 명		영업신고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소 재 지			
대 표 음 식			
지 정 기 간	. . . ~ . . .		
<p>위 업소를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김 해 시 장</b> 인</p>			

[별지 제5호서식]

<b>김해시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b> (제4조제6항 관련)			
업 소 명 (업 종)		영업신고 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내용			
<p>「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김해시 맛집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p> <p>김해시장 귀하</p> <p>※ 구비서류- 영업신고증</p>			

- ◇ 개정이유
- 김해시 맛집의 지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맛집 육성을 위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안 제3조)
  - 맛집의 지정,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맛집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 (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 허성곤

2021년 7월 16일

김해시 조례 제1689호

###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졸업생”이란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장은 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 존속이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2.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휴학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 ③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및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 또는 미취업 졸업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부터 적용한다.

### ◇ 제안이유

○임해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 제4조)
- 지원 대상 및 기간 (안 제5조)
- 업무의 위탁 (안 제6조)
-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 중지 (안 제7조, 제8조)